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50

발의연월일: 2021. 4. 1.

발 의 자:정찬민·강대식·곽상도

권영세 · 김선교 · 배준영

백종헌 • 조수진 • 지성호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2020.1.29. 공포, 2021.1.20. 시행)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음.이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음.

그러나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히 사립유치원 중원아 수가 일백명(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다른 유치원과 달리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 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지도를"을 "교육 및 지도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유치원
	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
	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
	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	
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	
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	
생활 관련 <u>지도를</u> 하며, 보호자	<u>교육 및 지도를</u>

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